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(02)738-6898 / 전송 (02)720-2003

문서번호 국행삼 06065 -

시행일자 1996. 12. (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취급		행정조정실장	국 무 총 리
보존	3년		
조정관			
심의관		총괄심의관	
기안	송재용		협조

제목 : 『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』 추진철저 지시(국무총리지시 제 1996-17 호)

1. '96. 12.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한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」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해당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.

(1) '96. 12.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, 환경부는 '96. 12. 20까지 이를 총괄·종합하여 국무총리실로 보고하기 바람.

(2) 아울러 환경부는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확대·보강하고, 실무대책반을 편성·운영하는 한편, 시·도 단위에서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(3) 특히, 내무부는 12월 반상회시 이번 대책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.

나.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,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·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.

다. 각 부처별 추진상황은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보고하시기 바람.

2. 아울러 12.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·당부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.

붙임 :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1부

환경보전위원회 개최결과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재정경제원, 내무부, 국방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농림부, 환경부,
건설교통부, 문화체육부, 총무처, 공보처, 농촌진흥청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(02)738-6898 / 전송 (02)720-2003

문서번호 국행삼 06065 - 152

시행일자 1996. 12. 9 (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취급		행정조정실장	국 무 총 리
보존	3년		
조정관	✓		✓
심의관	✓	총괄심의관	✓
기안	송재용		협조

제목 : 『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』 추진철저 지시(국무총리지시 제 1996-17호)

1. '96. 12.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한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」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해당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.

(1) '96. 12.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, 환경부는 '96. 12. 20까지 이를 총괄·종합하여 국무총리실로 보고하기 바람.

(2) 아울러 환경부는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확대·보강하고, 실무대책반을 편성·운영하는 한편, 시·도 단위에서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(3) 특히, 내무부는 12월 반상회시 이번 대책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.

나.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,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·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.

다. 각 부처별 추진상황은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보고하시기 바람.

2. 아울러 12.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·당부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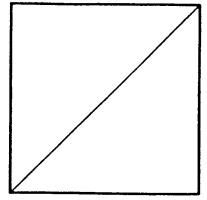
붙임 :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1부

환경보전위원회 개최결과 1부. 끝.

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재정경제원, 내무부, 국방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농림부, 환경부,
건설교통부, 문화체육부, 총무처, 공보처, 농촌진흥청



議案番號	第 號
議 決 年 月 日	1996. 12. (第 回)

審
議

'97「飲食物쓰레기줄이기」綜合對策(案)

環境保全委員會案件

提出者	關係部處合同
提出年月日	1996. 12. .

1. 議決注文

'97 「飲食物쓰레기 줄이기」 綜合對策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.

2. 提案理由

과다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음식물의 生產 · 流通 · 所費段階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低減하고,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資源化 하기 위한 「飲食物쓰레기 줄이기」 綜合對策을樹立·施行하고자 함.

3. 主要骨子

- 가.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 義務化 사업장의 範圍를 확대하고, 住宅 · 觀光團地 開發事業時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함.
- 나. 채소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쓰레기誘發負擔金制를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, 음식물쓰레기 를 이용한 퇴비 · 사료의 公共機關 優先購買를 실시함.
- 다. 「좋은식단제」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「模範飲食店」을 활성화 하여 음식점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結婚式場 등에서의 飲食提供 抑制를 유도함.

- 라. 음식물쓰레기 處理施設 擴充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財政支援을 강화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계에 우선 지원함.
- 마.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共同收去 및 供給體系를 구축하고, 再活用窓口를 개설하여 수요처를 확대함.
- 바.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술 개발을 위하여 專擔研究機關을 지정·운영하고, 처리기기 綜合展示展을 개최함.
- 사.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'97년을 「健全한 飲食文化 定着의 해」로 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·교육을 실시함.

'97 「飲食物쓰레기 줄이기」 綜合對策(案)

順序

I. 음식물쓰레기 發生 및 處理현황

II. 그간 飲食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政府의 노력

III. 주요 問題點

IV. 對策 推進方向 및 重點推進課題

V. 推進方法

I. 飲食物쓰레기 發生 및 處理現況

-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發生量은 하루 1만 5천여톤으로서 生活쓰레기 발생량의 31.6%를 차지
 - 農漁村地域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퇴비·사료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, 都市地域의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음.
 - 특히, 쓰레기 從量制 실시이후 일반쓰레기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는 매우 미흡

구 분	'91	'93	'95
생활쓰레기 발생량(톤/일)	92,246	62,940	47,774
음식물쓰레기(톤/일)	26,311	19,940	15,075
점 유 비 율	28.5%	31.4%	31.6%

- 1人當 하루 음식물쓰레기의 發生量은 평균 0.34kg('95년)으로 OECD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배출되는 실정
※ 영국·프랑스 0.26kg/일, 독일 0.27kg/일
- 음식물쓰레기의 主發生源은 음식점과 가정(83%)이며, 性狀別로는 채소류가 53.1%로서 주종
 - 발생원 : 음식점 42%, 가정 41%, 대형유통시설 13%
 - 성상별 : 채소류 53.1%, 어육류 18.6%, 곡류 14.7%
-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95.4%가 埋立處理되고 있으며, 재활용되는 양은 하루 316톤으로서 불과 2.1%에 해당

II. 그간 飲食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政府의 노력

-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 '82년부터 「注文食單制」를 실시해오다 '92년부터는 「좋은식단제」로 전환하여 추진
- '93. 9월, 대규모 집단급식소, 식품점객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減量을 의무화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)
- '95. 5월, 차관회의에서 關係部處協議體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·추진토록 결정
 - '95. 7월, 환경부·보건복지부등 8개기관으로 「음식물쓰레기 관리협의체」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

III. 주요 問題點

- 과도한 상차림과 국물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食生活文化
 -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, 실생활 속에서 개인의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함
-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特性(수분·염분·악취)
 - 水分含量이 80~85%로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거·운반시 악취가 발생
 - 과다한 염분 함유(약 3%)로 퇴비화하기 어려움.
-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등 2차 環境汚染을 誘發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
 - 소각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 사용 필요

-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이 미흡하고, 公共處理施設도 부족
 - 자원화에 관한 표준화된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, 公共處理施設도 初期普及段階로 체계적인 재활용이 미흡
- ⇒ 전체 農產物의 70% 이상을 輸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귀중한 食糧資源과 外貨浪費를 초래

IV. 對策 推進方向 및 重點推進課題

<基本方向>

- ◇ 음식물의 生產·流通·消費段階에서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(Source Reduction)
- ◇ 부득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별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堆肥·飼料등으로 최대한 資源化

<推進目標 >

- 2001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先進國 水準으로 줄이고 자원화 확대

	'95	2001
○ 1人當 排出量	0.34kg/일	0.27kg/일
○ 자원화비율	2.1%	21%

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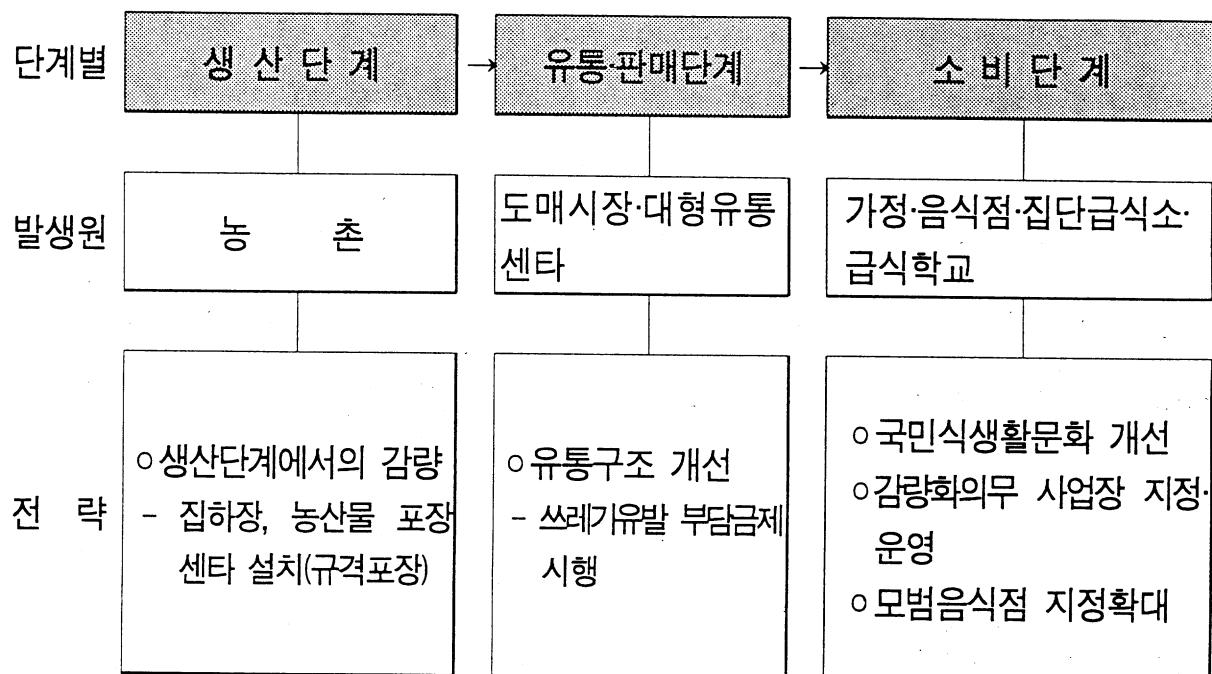
※ 매립·소각량의 31%를 감축하는 효과('95년 대비)

生活廢棄物 管理 基本原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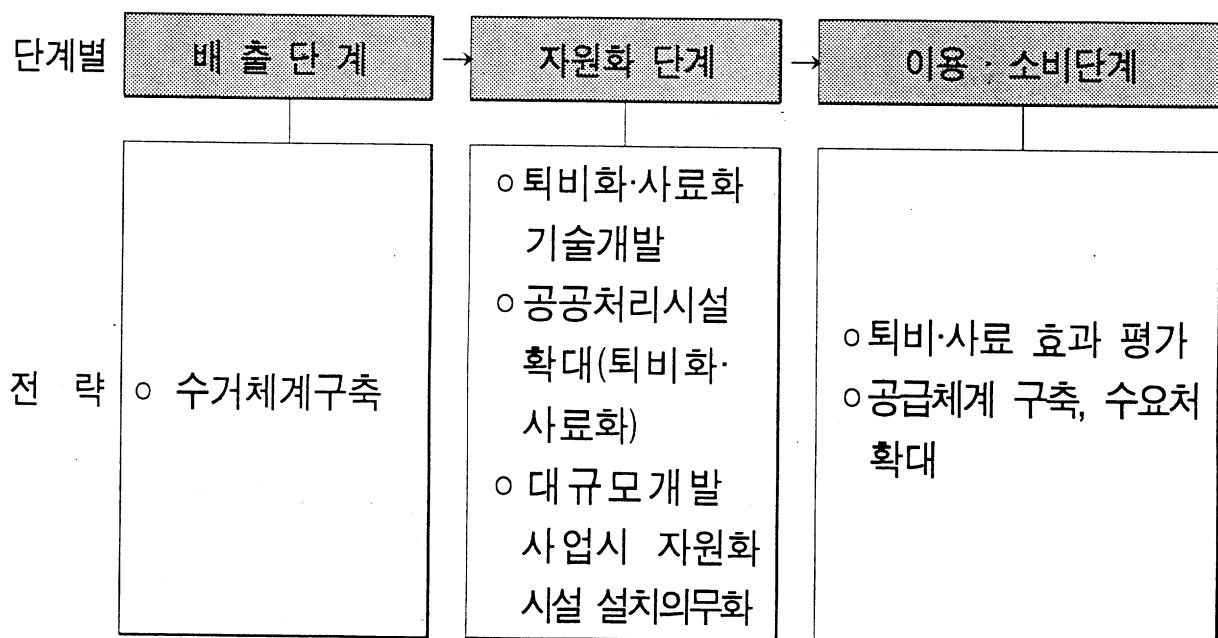
- ◇ 廢棄物管理法 제4조의 「自治團體 處理責任의 原則」에 따라
 - 毒性이 강한 有害廢棄物의 처리는 國家가,
 -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生活廢棄物의 처리는 自治團體가 그 처리책임을 지게 됨
- ◇ 飲食物쓰레기를 포함한 生活廢棄物의 적정한 관리는
 - 「發生地 處理」原則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固有業務領域에 속하는 것으로서
 - 市·郡·區별로 地域實情에 맞는 종합처리시설 확충 및 매립·소각·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
 - ※ 수도권, 부산 등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한으로 국민적 관심 고조
- ◇ 中央政府 次元에서 自治團體의 飲食物쓰레기 줄이기 추진노력을 強力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
 - ① 法的 · 制度的 支援事項,
 - ② 財政的 · 技術的 支援事項,
 - ③ 國民運動, 弘報 및 教育事項을 적극 발굴,
生活改革次元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

< 管理戰略 >

□ 減量化



□ 資源化



1. 法的 · 制度的 개선

1-1. 음식물쓰레기 減量化 대상 擴大 및 관리강화(환경부, 시·도)

-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義務化되는 대상사업장의 範圍를 擴大 하고, 식품점객업소를 중심으로 감량화 이행 지도·점검등 관리를 강화

	현 행	개 선
집 단 급 식 소 (학교·병원·공장 등)	2,000인 이상	100인 이상(조례로 50인이상)
식품점객업소	660m ² 이상	100m ² 이상(조례로 33m ² 이상)
시장·백화점·호텔	제외	감량 의무화

※ 시행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'97. 7. 1부터로 하고, 시행결과를 토대로 조정

-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減量基準 설정 및 減量方法 다양화
 - 감량기준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량의 30% 이상, 감량 방법은 탈수, 건조, 발효, 소멸화, 재활용등으로 다양화 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조례 개정)

1-2. 住宅, 觀光團地 開發事業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(환경부, 건교부)

- 인구유발요인이 큰 대규모 住宅·觀光團地 개발사업에 대한 環境影響評價時 자원화시설 설치 조건 부여

※ 「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法律시행령」을 개정하여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
-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등 共同住宅 건설시 음식물쓰레기 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시설을 설치. 다만, 공공처리 시설 설치지역과 재활용 실시지역은 제외

1-3.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誘發負擔金制 확대(농림부, 시·도)

- 농수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(46개소)·공판장(86개소)에서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 확대 실시(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, 배추등 6개 품목대상)
※ '96. 6. 1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만 실시중

1-4.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·사료의 公共機關 優先購買 사용

-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(국무총리 훈령 제295호) 적용

1-5.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公定規格 개선(농촌진흥청)

- 현재 원료의 30%이하로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사용비율을 염분농도기준으로 대체하여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촉진(비료공정규격 개정)

1-6. 「좋은식단제」 확대 및 「模範飲食店」 활성화(보건복지부)

- 좋은식단제를 全體음식점(43만개소)에서 실시도록 확대하고, 한정식·일식등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집중관리
-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優秀 실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)하고, 수도료 감면(30%), 시설 개·보수자금 융자(식품진흥기금) 등 행정적 지원 강화

1-7. 결혼식 및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飲食提供 抑制(보건복지부)

- 식사시간대에 개최되는 결혼예식시에는 간단한 음식(국수등)을 제공하고, 이외에는 간소한 담례품 제공 유도
-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結婚式場 대여행위 단속

1-8. 음식물쓰레기 관련 統計의 檢證 · 내실화(환경부, 통계청, 시·도)

- '96 폐기물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, 재활용 비율등 기초통계자료 검증

2. 財政的·技術的 지원

2-1. 國家的 次元에서 음식물쓰레기 處理施設 확충지원 (재경원, 환경부, 시·도)

- 2001년까지 4,67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·군·구별로 資源化施設 설치지원(국고 50%)

시설수	시설규모 (톤/일)	투자 계획 (억원)					
		계	'97까지	'98	'99	2000	2001
235	3,525	4,672	222	300	900	1500	1,750

- 再活用産業 育成資金 우선지원(환경부)
 - '9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50억원중 50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우선지원 조치
- 軍部隊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확대(국방부)
 - '99년까지 198개소에 시설 설치('97년 64개소)
-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 飼料化 사업등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 지원(환경부, 시·도)
 - 경기도 여주군의 시범사례(15톤/일) 등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확산 및 지원방안 강구

2-2. 지방자치단체별 共同收去·供給體系 구축

- 음식물쓰레기의 체계적 收去體系 확립(시·군·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)(환경부)
 -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이용하고, 공동주택·음식점은 고속발효기와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지정일에 일괄수거후 재활용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확립
- ※ 가정용·업소용 음식물쓰레기 “전용봉투” 또는 “전용용기” 제작·활용

-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實踐指針」 제정(환경부)
 - 가정·음식점등에서의 구체적 배출요령, 수거용기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·보급
- 음식물쓰레기 및 1차발효 副產物의 체계적 공급·활용(자치단체)

< 서울시 예시 >

- 강동·강북·도봉·광진구 8,000가구는 경기도 양주군 퇴비장에 반입
- 노원구 4,000가구는 경기도 남양주군 양수리 유기 농가에 공급
- 동작·송파·강동 7,400가구는 고양시 pilot plant에 반입 (5톤/일)

< 부산시 예시 >

- 가정용 발효통을 보급(30만세대), EM발효제로 발효 시킨 후 김해, 양산등 농가에 공급(95톤/일)
 - ※ 희망농가, 유기질 비료제조업체(150개소), 농협공동퇴비장(49개소), 화훼단지등 수요처 연결 활용

- 퇴비·사료용으로 직접 再活用하는 방안 강구(자치단체)
 - 시·군·구별로 농가(농장) 및 양묘장, 수목원, 농작물 시험장, 화훼단지, 산림, 가로화단, 가로수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
 - ※ 觀光農園(294개소), 週末農場(110개소)에서 직접 퇴비를 생산·시비하는 현장 체험의 기회도 부여

2-3. 음식물쓰레기 「再活用 窓口」 개설·운영(환경부, 농림부, 한국자원재생공사)

- 음식물쓰레기 배출자(都市)와 수요처(農村)를 중개·알선하여 재활용 촉진
 - ※ 都·農간 姉妹結緣등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有機農產物 판매·지원

2-4. 음식물쓰레기 專擔研究機關 지정·운영(환경부, 복지부, 농진청)

- 한국환경기술개발원, 농업과학기술원, 한국식품위생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음식물 쓰레기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특성에 맞는 저감방안 집중 연구·개발 및 보급
 - 음식물쓰레기중 염분농도 및 냄새 저감기술 개발(농진청)
 - 퇴비화 촉진을 위한 숙성발효 기술개발(농진청)
 - 음식물쓰레기 혼합사료 개발(농진청)
- ※ 매년 합동으로 추진실적 평가·보고대회 개최

2-5. 음식물쓰레기 處理技術 研究開發 촉진(환경부, 생산기술연구원)

- 음식물쓰레기 감량화·퇴비화·사료화기기 綜合展示展을 개최하여 시장정보를 교류하고 관련기술개발 촉진
- 감량화시설의 구조 및 성능규격에 대한 品質認證制를 확대하여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(K마크)

2-6. 自治團體의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」 추진실적 評價 및 재정적 差等 지원(환경부)

- '97년부터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'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차등화
- ※ 「음식물쓰레기 줄이기」를 주요 國政評價課題로 선정하여 평가

3. 國民運動, 弘報 및 教育 지원

3-1. 「음식물쓰레기 半으로 줄이기」 캠페인 전개(환경부, 공보처)

- 1997년을 「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」로 설정하여 언론사,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

3-2. 대대적인 飲食文化改善運動 주진

- 음식문화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, 음식업자 대표 등으로 「飲食文化改善運動本部」 발족(보건복지부)
- 公職者부터 模範을 보이기 위해 「광화문 청사」·「과천청사」 등에서 실천홍보 및 직원교육 실시(총무처)
 - “점심은 간단하게, 저녁은 가족과 함께”

3-3. 공익광고 등을 통한 飲食文化의 改善 적극 弘報(공보처, 문체부, 정통부)

- 외국의 좋은사례등을 발굴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 개선 추진(공익광고, TV드라마 등 활용)
- 「114 안내」 등 공공기관의 각종 案內電話 대기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, 「바람직한 식생활 예절문화」 책자 등 발간·배포

3-4. 大規模 給食機關에서의 음식물쓰레기 減量 실천

- 軍部隊·矯正機關에 표준식단제를 도입하고, 「음식 안남기기 운동」과 「잔반통 없는 날」을 지정·운영(국방부, 법무부)

- 紿食學校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지도(교육부)
 - 올바른 食生活習慣 教育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과 개발·보급
 - ※ 중·고등학교의 「環境科目」 선택확대, 대입수능시 논술 주제 선택 유도
 -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학교 및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확대
 - 영양사, 조리사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연수(협회)
- 공무원교육기관, 청소년수련기관 등 각종 교육·훈련 기관에서의 教育講座 개설(총무처, 문화체육부)

3-5. 소비자단체·여성단체등 民間次元의 운동으로 확산·전개 (환경부, 보건복지부, 재경원)

- 名譽環境監視員(18천명), 名譽食品衛生監視員(1,500명)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으로 활용
-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에 대해 消費者團體等 민간단체 중심으로 自律的 감시·評價 활동전개·지원

3-6.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優秀機關 및 團體에 대한 褒賞 (총무처)

-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크게 기여한 자치단체, 시민단체 및 유공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연 1회 포상실시